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. 12. 24 선고 2019가단346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2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, 피고 B는 3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, F는 각 2/11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2. 1. 15. 접수 제3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피고들은 근저당권자 G의 상속인들이다)

판사전서영

별지